

## 신혼부부 특별공급 안내문

### ■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

구분	내용
신청자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부산광역시, 울산광역시, 경상남도 거주 무주택 세대 구성원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혼인기간 7년 이내(혼인신고일 기준, 재혼포함)</li> <li>② 「신혼부부 주택특별공급 운용지침」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충족</li> <li>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및 지역별 / 면적별 예치금 이상</li> </ul> </li> <li>※ 혼인신고일 ~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</li> <li>- 2018.12.11 이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</li> </ul>
선정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우선공급 (70%) 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 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% 이하인 자(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% 이하)</li> <li>② 일반공급 (30%) 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 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% 이하인 자(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60% 이하)</li> <li>※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미 선정 시 일반공급(30%)에 포함</li> </ul>
경쟁시 우선순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1순위 :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출산한 자녀가 있는 자 (임신, 입양 포함)</li> <li>② 2순위 : 무자녀 / 2018.12.11 이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 경과한 자</li> </ul> </li> <li>▶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부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</li> <li>② 미성년 자녀(태아포함) 수가 많은 자</li> <li>③ 미성년 자녀(태아포함) 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선정</li> </ul> </li> </ul>
유의사항	① 임신과 입양의 경우, '임신진단서' 등과 같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, 입주 전 파양이나 불법 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및 부적격 처리

### ■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표

공급유형	구분	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						
		3인 이하	4인	5인	6인	7인	8인	
신혼부부 우선공급 (기준소득, 70%)	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	100% 이하	6,030,160원	7,094,205원	7,094,205원	7,393,647원	7,778,023원	8,162,399원
	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	100% 초과 ~ 120% 이하	6,030,161원 ~ 7,236,192원	7,094,206원 ~ 8,513,046원	7,094,206원 ~ 8,513,046원	7,393,648원 ~ 8,872,376원	7,778,024원 ~ 9,333,628원	8,162,400원 ~ 9,794,879원
신혼부부 일반공급 (상위소득, 30%)	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	100% 초과 ~ 140% 이하	6,030,161원 ~ 8,442,224원	7,094,206원 ~ 9,931,887원	7,094,206원 ~ 9,931,887원	7,393,648원 ~ 10,351,106원	7,778,024원 ~ 10,889,232원	8,162,400원 ~ 11,427,359원
	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	120% 초과 ~ 160% 이하	7,236,193원 ~ 9,648,256원	8,513,047원 ~ 11,350,728원	8,513,047원 ~ 11,350,728원	8,872,377원 ~ 11,829,835원	9,333,629원 ~ 12,444,837원	9,794,880원 ~ 13,059,838원

- 기준소득 :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,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00%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,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%초과 시 일반공급 30%(상위소득)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(월평균 소득기준 120%초과~160%이하)를 선택하여야 합니다.  
 - 상위소득 :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,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40%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.  
 -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→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 + (1인당 평균소득(384,376) \* (N-8), 100% 기준) ※ N → 9인 이상 가구원수

### ■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

해당자격	소득입증 제출자료	발급처
일반근로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재직증명서</li> <li>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 증명서</li> <li>■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: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 증명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해당직장</li> <li>■ 해당직장/세무서</li> </ul>
근로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재직증명서</li> <li>■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(직인날인)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</li> <li>※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→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 제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해당직장</li> <li>■ 국민연금공단</li> </ul>
전년도 전직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재직증명서</li> <li>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해당직장</li> </ul>
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(직인날인) 또는 직인날인된 월별급여명세서(근로소득지급조서)</li> <li>※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해당직장</li> </ul>
일반과세자 / 간이과세자 / 면세사업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</li> <li>■ 사업자등록증 사본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세무서</li> </ul>
자영업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</li> <li>■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세무서</li> <li>■ 등기소</li> </ul>
간이과세자 소득세 미신고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※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 제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세무서</li> </ul>
신규사업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(부분)</li> <li>■ 사업자등록증 사본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국민연금관리공단</li> <li>■ 세무서</li> </ul>
보험모집인, 방문판매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</li> <li>■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서</li> <li>■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해당직장</li> <li>■ 세무서</li> </ul>
국민기초생활수급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주민센터</li> </ul>
비정규직, 일용직 근로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계약 기간 및 총 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(직인날인)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(직인날인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해당직장</li> <li>■ 국민연금관리공단</li> </ul>
무직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비사업자 확인 각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본주택</li> </ul>

## ■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출서류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 기준	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공통서류	○		※서약서, 개인정보수집·이용동의서	-	• 견본주택 비치
	○		신분증	본인	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
	○		주민등록표등본(상세)	본인	•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
	○		주민등록표초본(상세)	본인	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·사유 및 발생일(인정보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
	○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본인	•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(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 3자 대리신청은 불가)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•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“상세” 로 발급
	○	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•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“상세” 로 발급
	○		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	본인 및 세대원	•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,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
	○		주민등록표등본(상세)	배우자	•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(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)
	○		복무확인서	본인	•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(수도권)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- 군복무기간(10년 이상)을 명시
신혼부부 특별공급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배우자	• 자녀로 인정보고자 하는 배우자 전혼 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
	○		기본증명서(상세)	자녀	• 1순위자로서 혼인기간 중 자녀 출생 일자 확인 필요 시
	○		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	본인 또는 배우자	•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(임신진단서,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)제출 (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) ※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(담당사명, 의료기관등록번호, 출산예정일, 의료 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,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)
	○		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	배우자	• 입양의 경우
	○		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	배우자	•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
	○		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	본인 및 배우자	•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- 발급처: 국민건강보험공
	○		소득증빙 서류	만19세 이상 세대원	•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
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	○		사업주체가 요구하여인정하는 서류	해당 주택	•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
	○		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자료	해당 주택	• 등기사항전부증명서, 건축물대장등본, 무허가건축확인서, 건축물철거명실신고서 등 • “소형·저가주택등” 임을 증명하는 서류(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) •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	○		인감증명서	청약자	• 용도: 주택공급신청 위임용,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(서명인증서)이나 이에 관한공정증서
	○		인감도장	청약자	•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
	○		위임장	청약자	•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, 견본주택에 비치
	○		신분증,인장	대리인	•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(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)

※ 상기 제증명서류(신청자 구비서류)는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(2021.06.30)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처리되며,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  
 ※ 인감증명서 용도란은 공관으로 발급하므로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.(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)  
 ※ 상기 제증명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체표기하여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.  
 ※ 주민등록표등·초본 발급시 '세대주 성명 및 관계'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'세대주 성명 및 관계'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  
 ※ 해당 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이 필요합니다.  
 ※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(배우자 및 직계존·비속 포함)로 간주합니다.

사전 서류 제출 후에도 추가로 확인이 필요할 경우,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